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해사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등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해양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통항수역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으로 포함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기존 안전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재진단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 등 규정(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3, 안 제20조의4, 별표4의3, 별표4의4, 별표4의5)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도입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자격시험 일부면제를 위한 자격기준,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선박안전관리사 협회의 정관에 포함할 내용 규정(안 제20조의6)

선박안전관리사 협회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1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 수리 등에 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

장에게 위임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부대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규정(안 제21조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개선(안 별표2의3)

여객선 통항수역에서의 해양개발행위를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으로 확대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재진단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진단 기준이되는 선박의 길이 및 대상 수역 설정 기준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법 제46조제2항·제4항”을 “법 제46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법 제46조의3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재해발생 시 선박 작업중지 지원 및 선원대피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제20조의5로 하고,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및 제2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선박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6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제20조의3(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① 법 제61조의2제6항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별표 4의4와 같이 등급에 따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의 과목 및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기준은 별표 4의5와 같다.

③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제20조의4(시험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자격시험은 1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시험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자격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 해사안전 및 선박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대학에서 해사안전 및 선박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한 사람
 3.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해사안전 및 선박안전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선박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경력증명을 위한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합격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⑦ 자격시험의 응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⑧ 그 밖에 자격시험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 실시 기관이 정한다.

제20조의6(선박안전관리사협회)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21조제2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6까지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15의2.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5의3.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

15의4. 법 제46조의3제4항에 따른 통보의 수리

15의5. 법 제46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

15의6. 법 제46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선임요구

30. 법 제110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심사대행기관에 위탁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1.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실시
2.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공고
3.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4.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합격자 공고
5. 제20조의4제6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신청 접수
6. 제20조의4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면제 대상자 확인
2. 법 제61조의2제6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3. 법 제61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

4. 법 제61조의5에 따른 자격의 취소·정지

제2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1호가목 중 “선박”을 “선박 또는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선박”을 “선박 또는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본문 중 “선박”을 “선박 또는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선박”을 “선박 또는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다목 중 “선박”을 “선박 또는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호에서 제4호, 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안전진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이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기존 진단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진단 가능)

별표 2의3 비고 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 또는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이란 해당 선박이 1일 평균 4회 이상 통항하는 수역을 말하며 수역의 범위는 인근에 통항하는 최대선박의 길이의 5배 안의 수역으로 정한다.

별표 2의3 비고 제1호 후단 중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를 “해당

선박이”로, “선박”을 “선박 또는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길이”는 대상선박의 전장(全長)을 말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의3부터 별표 4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어목 중 “법 제45조를”을 “법 제45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호 저목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처목 중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을 “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로, “두지”를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지”로 하고, 같은 호 허목부터 우목까지를 각각 도목부터 쿠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커목부터 퍼목까지를 각각 퍼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커목 및 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법 제4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18호 의2	200
터. 법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5항제1호	30

별표 5 제2호에 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 법 제6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10조 제5항제2호	30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1조제7항, 제21조의2, 별표 3, 별표 4의3, 별표 4의4, 별표 4의5, 별표 5 제2호노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착수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2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노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5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6조제5항(법률 제18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별표 5 제2호처목의 개정규정(법 제46조의2제1항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자를 선임하도록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4의3]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등급 및 응시자격(제20조의2 관련)

선박안전관리사 등급	응시자격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안전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보유한 사람 2. 2급 이상 해기사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보유한 사람
2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안전관리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보유한 사람 2. 3급 이상 해기사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보유한 사람
3급	제한 없음

비고

1. 현장경력에는 승선경력을 포함하며, 현장경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2. 해기사 면허가 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된다.

[별표 4의4]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시험의 방식

등급	필기	면접
1급	객관식 4지 택일형 및 논술형 - 과목별 100점, 과락 40점, 전체 평균 60점	구술형 (서술식) - 100점중 60점 이상
2급	객관식 4지 택일형 - 과목별 100점, 과락 40점, 전체 평균 60점	구술형 (단답식) - 100점중 60점 이상
3급	객관식 4지 택일형 - 과목별 100점, 과락 40점, 전체 평균 60점	

[별표 4의5]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

시험과목	목표	내용 구성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 및 해양환경 보호 관련 법령과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	국내법 8종, 국제협약 6종 - (국내법) 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②선원법, ③선박직원법, ④선박안전법, ⑤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⑥해운법, ⑦해사안전법 ⑧국제선박항만보안법 - (국제협약) ①SOLAS, ②MARPOL, ③STCW, ④Loadline, ⑤Tonnage, ⑥MLC
해사안전관리론	사고예방 기법, 사고관리 기법, 사고대응 절차,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능력 함양	정부의 대표적인 사고예방 기법인 항만국 통제제도 및 해사안전감독, 안전관리·비상대응 절차, 해양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해양관할권 및 항행권과 관련한 내용
해사안전경영론	안전경영정책 목표, 책임, 조직, 절차 수립·운영,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경영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이론과 실무에 대한 능력을 함양	안전에 대한 법적책임, 안전정보의 확인, 안전경영정책의 수립·계획·측정·검사, 안전조직 구성·운영, 안전경영정책 환류와 관련한 내용
선박자원관리론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항해를 위해 선박의 인적 및 물적자원관리, 리더쉽 및 팀워크 교육, 선교 및 기관실 자원관리에 대한 이해	인적자원관리, 과업 및 업무량 관리 적용 능력, 의사소통, 의사결정기술, 선박기기, 선박구조, 선박관리시스템
선택과목	-	‘항해’ (해기사 시험과목 중 ‘항해’와 ‘상선전문’ 과목) ‘기관’ (해기사 시험과목 중 ‘기관(1)’과 ‘직무일반’ 과목) ‘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관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관련법령, 안전 및 비상대응에 관한 사항) 중 택일

비고

1.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자는 선택과목 중 ‘항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대상 과목은 해기사 면허 취득시 응시하였던 시험과목에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지도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선택과목 중 ‘산업안전관리’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3. 시험과목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원서에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제2조(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			
부분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			
아닌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을	-----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	-----			법 제46조
제2항 · 제4항, 제47조, 제49조	-----			제2항 · 제3항-----
및 제50조를 적용한다. 다만,	-----			-----.
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			-----
따른 선박 중 그 선박의 소속	-----			-----
국가 또는 그 소속 국가가 인정	-----			-----
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	-----			-----
심사증서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u><신 설></u>				<u>제15조의2(안전관리책임자 등의</u>
				<u>업무) 법 제46조의3제1항제7호</u>
				<u>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업무”란 재해발생 시 선박</u>
				<u>작업중지 지원 및 선원대피 지원</u>
				<u>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u>
				<u><삭 제></u>
<u>제16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u>				
<u>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46조</u>				
<u>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u>				
<u>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u>				

인원 등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신 설>

제20조의2(선박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61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제20조의3(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① 법 제61조의2제6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별표 4의4와 같이 등급에 따라 필기 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의 과목 및 제20조

<신 설>

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기준은 별표 4의5와 같다.

③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제20조의4(시험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자격시험은 1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시험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자격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 해사안전 및 선박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대학에서 해사안전 및 선박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해사안전 및 선박안전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선박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경력증명을 위한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20조의2 (생략)

<신설>

공고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합격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자격시험의 응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⑧ 그 밖에 자격시험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이 정한다.

제20조의5 (현행 제20조의2와 같음)

제20조의6(선박안전관리사협회)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제21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3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24호, 제25호 및 제2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 14. (생략)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21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법 제46조제3항 후단에 따
른 통보의 수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6. ~ 29. (생 략)

<신 설>

③ 삭 제

④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14의2.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15. 법 제46조제4항 -----

15의2.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5의3.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

15의4. 법 제46조의3제4항에 따른
통보의 수리

15의5. 법 제46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

15의6. 법 제46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선임요구

16. ~ 29. (현행과 같음)

30. 법 제110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법 제46조의3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또는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
심사대행기관에 위탁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

⑥ (생 략)

<신 설>

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
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1.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
시험의 실시
2.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공고
3.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4.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합격자
공고
5. 제20조의4제6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신청 접수
6. 제20조의4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②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 및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원 등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면제 대상자 확인</u> 2. <u>법 제61조의2제6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u> 3. <u>법 제61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u> 4. <u>법 제61조의5에 따른 자격의 취소·정지</u>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821